

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5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상호	전화번호
	대표자	
	본점 소재지	

변경사항	
------	--

신청목적	
------	--

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40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2항 및 제3항, 「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」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청인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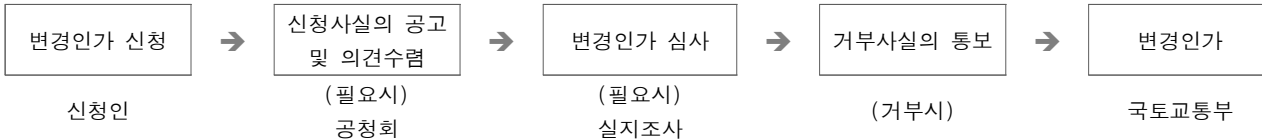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영 제42조의4 제1항제1호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일 경우 : 개략적인 도면, 본점의 이전 시 이전하려는 사무실을 사용할 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계약서 등)영 제42조의4 제1항제2호 주요 주주에 관한 사항일 경우 :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,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(주식회사의 경우에 한한다), 추가되는 주요주주가 [별표3] 출자자 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기재한 확인서영 제42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의 경영에 관한 사항일 경우 : 경영사업에 대한 계획, 경영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업무와 구분관리 계획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회의의 의사록기타 변경인가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에 필요한 서류
------	---